

의안 번호	2609	【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6. 8. 21.(금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8. 21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9. 3.(목)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에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와 탄소중립 우수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으로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8조, 제3장 제목 및 제10조)
 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 - (개정)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
- 위원 위촉 시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제4항)
-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우수기관(단체, 사업장 등) 지정 및 현판 등 수여 근거 규정(안 제31조)

4. 근거법규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에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로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위원회 명칭 및 위촉에 관한사항, 우수기관 지정 및 현판 등 수여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

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【근거법규】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,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,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,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지사”는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본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·군·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시·군·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(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·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